반론보도청구권 및 정정보도청구권의 법적 성격

강현중
변호사 ·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1. 들어가는 말

가. 언론의 사회적 영향력 강화현상

언론의 사회적 기능이 날로 증강되어 가고 있는 현상을 적나라하게 나타내는 용어로 '제 4 부'라는 것이 있다. 국가권력을 분점하고 있는 입법, 사법, 행정의 3 부에 이은 제 4 부가 언론이라는 뜻의 용어로서, 언론이 국가사회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일컫는 말이다.

언론의 영향력이 강대하여 질수록 언론의 사회적 책임도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며, 국민이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신속하면서도 적절하게 보상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의 마련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언론보도의 속성상 방어할 방법이 없는 개인은 단 한번의 보도만으로도 많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며, 오보 뒤의 정정보도는 오보로 인한 피해를 완전히 보전할 힘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언론보도 후 빠른 시간 내에 피보도인의 청구로써 그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내지는 반박문을 동일한 언론기관에서 보도하도록 하는 제도가, 미흡하나마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주는 제도로서 필요한 것이라 하겠다.

나. 반론보도 청구권과 정정보도 청구권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이하에서는 정간물법이라고 한다)과 방송법 및 종합유선 방송법에서는 '정정보도청구권'을 인정하여 왔으며, 민법 제 764 조 소정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특칙으로 '정정보도 청구권'이 인정된다. 두 권리는 명칭은 같으나, 정간물법상의정정보도청구권은 반박보도문의 게재청구권이고, 민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은 언론사의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원상회복방법의 일종으로서 원보도를 정정하는 보도를 하도록 청구하는 권리로서 그 성격은 다른 것이었다.

그런데, 정간물법을 시행하여 오면서 발생하는 몇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고 용어를 성격에 맞도록 고쳐야 한다는 법조계와 학계의 주장과, 언론중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조정기능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힘입어 1995. 12.에는 정간물법 개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1996. 7. 1. 부터 그 개정법률이 시행되게 되었다.

금번 정간물법의 개정에서는 그 동안 명칭은'정정보도청구권'이나 그 성격은 '반론권'으로 파악되어 왔던 위 권리의 명칭을 '반론보도청구권'으로 개칭하고 (제 16 조), '반론보도청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필요적 중재사항으로, 민법상의'정정보도청구'는 임의적 중재사항으로 규정하여(제 19 조 제 1, 2 항), 민법상의 정정보도청구도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사항에 포함시키기에 이르렀고, 언론중재위원회가 직권에 의한 중재결정을 할 수도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였다 (제 18 조제 6 항).

이러한 제도의 대 개정에 즈음하여, 이 글에서는 정간물법 상의 반론보도청구권과 민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의 법률적인 성격, 요건, 권리행사방법, 행사의 절차 등을 살펴보아 두 가지 제도의 운용실무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이론적, 법적 근거

가. 이론적 근거

반론보도청구권과 정정보도청구권의 이론적인 근거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1) 언론자유의 내재적 한계이론 및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근대 시민국가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통치자들은 언론에 대하여 끊임없이 규제를 늦추지 않았고 언론통제로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프랑스 대혁명 후의 시민계급은 언론의 자유를 절대적 자유로 끌어올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 하였으며, 이러한 정신은 이후 자유주의국가의 보편적 이념이 되었다. 우리나라 헌법역시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 등을 금지함으로써 (헌법 제 21 조 제 2 항), 다른 기본권보다 우월적인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이 절대적 자유로서 보장되는 것은 그것이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타인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지 않고 공익에 합치되는 한도내에서만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언론의 자유를 남용하여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보도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타인의 또 다른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의 한계 밖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자기의 자유와 권리는 타인의 권리가 시작되는 곳에서 멈춰야 한다'는 이른바 '자유와 권리의 내재적 한계'로서, 이러한 언론의 자유의 내재적 한계의 원리는 각국에서 헌법규정상 또는 학설과 판례를 통하여 널리 시인되고 있다.

(2) 악세스권

악세스권이라 함은 정보원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즉 정부나 매스미디어 등의 정보보유자에 대하여 자기와 관련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좁게는 자기와 관계된 정보에 대한 반론, 정정, 해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된다. 따라서, 악세스권은 오늘날 언론의 자유를 사실상 독점하여 일방적으로 정보를 수집, 취재, 편집하고 보도, 배포할 권리를 향유하고 있는 정보제공자로서의 매스미디어의 이른바 취재, 보도의 자유로서의 언론의 자유와는 다른, 매스미디어로부터 정보를 공급받는 자의 언론의 자유 내지는 권리로서의 성질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실정법적 근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헌법 제 10 조), 언론의 자유(헌법 제 21 조)에 내포된 표현의 자유 내지는 알권리 등에서 구하여진다.

나. 법적 근거

반론보도청구권의 법적 근거는 헌법과 언론관계법률에, 정정보도청구권의 법적 근거는 헌법 및 민법에서 찾을 수 있다.

(1) 헌법

현행 헌법은 제 21 조에서 언론, 출판의 자유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금지함으로써 이를 두텁게 보장하는 한편으로,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되며, 그 같은 침해가 있는 경우 피해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그 배상에는 금전적 배상은 물론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의 청구 등과 같은 손해의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2) 민법

민법 제 750 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불법행위책임의 대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 751 조는 타인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경우에도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은 금전으로써 함이 원칙이나 (민법 제 763 조, 제 394 조), 민법 제 764 조는 명예훼손에 대하여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금전배상에 갈음하거나 이와 병행하여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하여 특별한 손해배상의 수단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3) 언론관계법률

정간물법 제 16 조는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로 하여금 언론사에 반론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제 18 조, 제 19 조는

언론사가 피해자의 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쳐 법원에 그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방송법(제 41 조) 및 종합유선방송법(제 45 조 제 1 항 내지 제 9 항)도 반론보도청구권을 인정함과 아울러, 정간물법 제 17 조 내지 제 20 조의 준용규정(방송법 제 42 조, 종합유선방송법 제 45 조 제 10 항)을 두고 있다. 위의 반론보도청구권은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과는 그 성질이 다른 「반론권」으로 이해되고있는 바, 이러한 반론권은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등 대륙법계 국가들을 중심으로 발전된 것으로서 1980. 12. 31. 법률 제 3349 호 언론기본법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다가 언론기본법이 폐지되고 정간물법과 방송법이 제정되면서 이에 승계되어 유지되어 온 제도이다.

3. 청구의 주체

가. 반론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의 주체는 당사자 능력이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므로 (서울민사지법 83.11.25. 선고, 83 카 22003 판결 ; 84. 5. 25.선고 84 카 1598 판결), 상당히 폭넓게 인정된다. 법인격 없는 단체의 부속기관, 보조기관에 지나지 않는 정부나 회사의 각 부처나 국, 과, 그리고 사단의 실체를 갖추지 못한 동호인 모임, 지역단체 등과 같이 하나의 사회적 생활단위로 실재하는 경우에도 청구의 주체가 된다. 정간물법 개정 이전에는 언론보도의 피해자가법인의 부속기관 등인 경우에 법인의 대표자만이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었으나,개정법률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제 16 조 제 7 항), 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는 그 법인격 유무에 불구하고 그 장의 이름으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는 것이다.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직접 피해를 입은 자 외에도 그 상속인이나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는가가 문제되기도 하는데, 이는 뒤의 요건부분에서 살피기로 한다.

나. 정정보도청구

정정보도청구의 주체는 불법행위인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당사자 또는 그 승계인으로서, 반론권에서와 달리 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능력(자연인, 법인과 같은 권리능력자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없는 자는 제외될 수 밖에 없어서, 이러한 자들에 대한 피해구제가 다소 미흡할 수도 있다.

4. 청구의 상대방

가. 반론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의 상대방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 (언론사)가 된다 (정간물법 제 16 조 제 1 항). 개정 전의 법률에서는 '발행인 또는 편집인'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반론청구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나 주소 등을 알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그러던 것을 이번 개정에서는 언론사를 상대방으로 규정함으로써 청구를 용이하게 한 것이다.

나. 정정보도청구

정정보도청구는 민법상의 권리이므로, 법인인 언론사를 대상으로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언론사 내의 일부 부서 (예를 들어 사회부, 편집부등)를 대상으로 청구할 수는 없고, 보도가 언론사의 명의로 된 정기간행물에 실린 만큼 사주나 발행인이나 편집인 등 자연인을 대상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

5. 청구요건 및 입증책임

가. 반론보도청구권

(1) 대상-정기간행물과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

(가) 정기간행물과 방송

정간물법 제 2 조 제 1 호에 의하면, 정기간행물이란 동일한 제호로 연 1 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신문, 통신, 잡지, 기타 간행물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정기라고는 하지만 반드시 정해진 시기에 간행된 것에 한하지 않으므로 합본이나 그 시기를 넘어서 간행된 것도 해당되며, 간행물의 내용은 묻지 아니한다. 방송에 관하여는 현행방송법과 종합유선방송법에 의거 무선방송 및 유선방송까지 반론보도청구권의 대상이 된다.

(나) 공표

신문이나 방송에 의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됨으로써 공표가 된다. 문제가 되는 것은 통신문이 나타 언론보도 또는 타인의 의견진술이나 경찰의 발표 등을 인용보도한 경우와 같은 풍문 내지는 전문형식의 보도이다. 인용보도나 전문보도라고 하여도 그 신빙성에 있어서는 단정보도와 별차이가 없고 그 같은 예외를 인정하면 이 제도가 유명무실해 질 수 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경우에도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법원도 같은 입장이다. (서울민사지법 83.8.19.선고 83 카 9146 판결 ; 89. 7. 7.선고 89 카 l1518 판결 ;89. 12. 29.선고 89 카 52256 판결 등)

(다) 사실적 주장의 보도

사실적 주장은 특정인의 내부적 가치관이나 의견, 감정의 표시 등 가치판단적 주장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가치판단적 보도에 대하여는 반론보도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양자의 구별기준이 문제되는데, 대체로 증거에 의하여 그 존부를 증명 할 수 있는 것이면 사실에 관한 것으로 볼 것이다. 나누어서 살펴보면,

⊙논설, 논평, 비평, 가십-이러한 것들은 그 자체로서는 일정한 가치판단으로서의 성질을 띠므로 사실적 주장이라고 할 수 없으나, 그 전제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해서는 반론보도청구가 가능하다 할 것이다.

⊙독자투고, 수기, 기고문-이것은 기고자의 주장이기는 하나 언론에 의해 공표된 이상 언론사의 주장이나 다름없는 것이어서 이에 대해서도반론을 청구할 수 있다. (서울민사지법 87.12.11.선고 87 카 40175 판결)

⊙ 만화, 사진-그 자체로 어떠한 사실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반론청구의 대상이 된다.

⊙ 의견광고, 상업광고-이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으나, 광고는 광고주의 의사를 그대로 게재하는 것이므로 광고주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함을 별론으로 하고, 언론사를 상대로 한 반론청구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에서 본 독자투고는 여론형성을 위한공약목적으로 게재하는 것인데 반해, 광고는 오로지 광고주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다르게 취급하여야 한다. 정간물법 제 16 조 제 3 항및 방송법 제 41 조 제 3 항, 종합유선방송법 제 45 조제 3 항이 상업적 광고만을 목적으로 한 반론보도청구를 배제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에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서울민사지법 84. 11. 30. 선고 84 카 34374, 34375 판결)

(2) 피해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어야 한다(정간물법 제 16 조 제 1 항, 방송법 제 41 조 제 1 항, 종함유선방승법제 145 조 제 1 항).

따라서, 피해가 없이 보도내용과 다른 의견이 있다고 해서 반박문 게재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서울민사지법 82,10.21.선고 81 다카 3689 판결).

가장 문제되는 것은 언론보도와 피해자와의 관련성 문제이다. 가명이나 익명으로 보도된 경우에는 주소,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소속정당, 종교, 취미, 신체 특성 등 사회 통념상 동일인으로 식별가능하면 그로 인한 피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서울민사지법 82. 9. 3. 선고 82 카 18633 판결 ;86. 9. 26. 선고 86 카 28755 판결 ; 서울고등법원 87. 3. 18.선고

86 나 4096 판결). 다만, 개별적 연관성이 없이 지칭된 경우에는 피해가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그 외에도 부모에 관한 명예훼손 보도로 인하여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 단체, 대표자 또는 구성원 중 일부로 인하여 다른 구성원이 피해를 입은 경우, 상품의 실제 고안자 이외의 자를 고안자라고 보도하는 경우 등에는 당사자를 연상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음에도 간접적 피해를 입은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직접적 관련성이 없이는 반론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법원의 태도도 같다(서울민사지법 84. 11.30. 선고 85 카 35089 판결 ; 89. 8. 18. 선고 88 카 62228 판결).

이 밖에, 법원의 판결례를 보면, 인터뷰의 내용이나 투고내용을 자의적으로 변경하여 보도하는 경우에는 피해가 있다 (서울민사지법 89. 9. 22.선고 89 카 28545 판결)고 보는 반면에, 기고 논문을 개작한 경우에는 저작권의 침해에 해당하고, 사실적 주장에 의한 피해가 아니므로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태도 (서울민사지법 83. 8. 26. 선고 83 카 17754 판결)를 보이고 있다.

보도내용이 진실한지 여부는 보도로 인한 피해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관계가 없다(대법원 86.1.28. 선고 85 다카 1973 판결).

(3) 소극적 요건

반박보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어야 한다. (정간물법 제 16 조 제 3 항 단서).

(가)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권의 행사가 배제된다(정간물법 제 16 조 제 3 항 단서, 방송법 제 41 조 제 3 항 단서, 종합유선방송법 제 45 조 제 3 항 단서).

어떠한 경우에 정당한 이익이 배제되는가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나, 언론기관이 자발적인 추후보도나 정정보도를 하거나 동일한 보도로 인한 다른 피해자가 이미 충분한 내용의 반박문을 게재하여 이미 반론보도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본질과는 무관한 지엽적인 것에만 관련되어 원보도문과 반론보도문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관한 법원의 태도를 보면, 언론사가 잘못된 보도에 대해 추후 자체적으로 관련기사를 보도했다 하더라도 원보도 내용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그 일부에 대해서만 반론하였을 뿐 아니라 원래 보도보다 지면의 위치나 크기 등이 훨씬 비중이 약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반론청구에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보며 (서울민사지법 89. 9. 22. 선고 89 카 28545 판결), 농성기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반박의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한다(대병원 86. 12. 23. 선고 86 다카 818 판결).

그 밖에도 반론보도의 필요성이 있더라도 반론보도문이 위법한 내용 (범죄선동, 명예훼손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와 같이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가 위법한 경우, 반론보도청구가 청구인의 상업적인 광고를 목적으로 함이 현저한 경우 등에도 반론보도청구의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정간물법 상의 반론보도청구권은 원 보도내용이 진실인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므로, 따라서 반론보도문의 내용도 진실 여부를 묻지 않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그렇다면, 정간물법에 규정된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란 어떤 의미인지가 문제된다. 생각컨대, 언론기관은 최대한으로 진실보도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그 누구도 언론기관에게 명백히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보도를 요구해서는 아니 되며, 반론보도의 내용이 사회일반에 걸쳐 이론의 여지가 없는 공지의 사실로서 통상인 누구라도 특별한 조사나 검증을 거치지 않고서도 알 수 있는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라면 언론기관에 반박보도를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규정으로 파악하면 될 것이다.

(다) 반론보도문이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반론보도문이 단지 상업적 광고만이 목적인 경우에는 반박보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4) 입증책임
언론기관이 피해자가 구하는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는 점 즉, 반론보도가 허위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나. 정정보도청구권

(1) 대상
사실적 주장의 보도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책임에 의한 정정보도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가치 판단적 보도의 경우는 대상이 되지 못할 것이다. 상업적 광고의 경우에는 본래의 언론의 영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책임의 주체가 광고주가 된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언론기관에 정정보도청구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2) 보도내용이 진실이 아닐 것.
원보도 내용의 비진실성이 요건이 되며, 이 점에서 반론보도청구권과 구별된다. 적시된 개개적 사실은 진실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이 아닌 보도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정정보도청구권이 인정될 것이다. 문제는 입증 책임인데, 반론권과는 달리 피해자가 불법행위의 구성요건으로서 원 보도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3) 보도자의 고의, 과실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인 만큼 보도자의 고의, 과실이 요구된다. 여기서 고의, 과실의 대상은 그러한 보도를 한다는 인식 또는 인식가능성이 아니라, 당해 보도내용이 진실이 아니고, 이로 인하여 관련자가 피해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점에 대하여 고의, 과실이 존재하여야 한다. 언론은 속성상 신속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에 있어 과실의 존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이다.

(4) 보도의 위법성
진실하지 못한 보도가 있더라도, 그에 대한 정정보도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보도가 위법하여야 한다. 진실한 보도는 언론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된 것으로서, 타인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거나 공익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행위이나, 진실하지 못한 보도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 보도의 동기와 내용에 공익성이 있고,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거나 과실이 부인되어 면책이 된다.

(5) 피해의 발생
피해의 종류는 제한이 없으므로 인격권의 침해이든, 재산권의 침해이든 상관이 없다. 보도내용과 피해자의 동일성 내지 연관성의 문제는 반론보도청구권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6. 권리행사방법

가. 반론보도청구권
반론보도청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반드시 거친 후에야 법원에 소로서 제기할 수 있는 중재전치주의를 법으로 채택하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중재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어 중재불성립 결정을 한 때, 중재신청이 기각, 각하결정된 때, 그리고 직권중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때에는 그러한 사실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4 일 내에 법원에 반론보도명령신청을 제기 할 수 있다.

나. 정정보도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에서와 같이 청구기한 등의 제한은 없고, 다만 소멸시효(민법 제 766 조 참조)가 완성되기 전에 청구하여야 한다. 종전에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이 바로 소를 제기할 수 있었으나, 이 글 서두에서 본 바와 같이 금번 정간물법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대상에 포함되었고, 따라서 청구인이 원한다면 중재전치주의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7. 중재 및 법원심리절차

가.중재절차

(1)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는 40 인 이상 80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법관, 언론관계 대학교수나 언론계인사(현직 언론인은 제외된다), 기타 인사로서 공보처장관이 위촉하며, 개별사건에 대한 중재는 5 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관장한다.

(2) 중재전치주의

반론보도청구를 법원에 소로서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쳐야 하며, 민법상의 정정보도청구의 경우는 청구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할 수도 있고 중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바로 법원에 소로서 제기할 수도 있다 (정간물법제 19 조 제 1 항, 제 2 항).

이러한 강제적 또는 임의적 중재전치주의는 피해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저렴한 구제의 기회를 마련하고, 언론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관으로 하여금 전문성을 살려 판단하도록 하고, 언론기관에 대해서는 반성과 재고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특히 민법상의 정정보도청구를 임의적 중재사항으로 규정한 이유는, 정정보도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청구권자는 요건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책임을 짐으로써 부담감을 갖게 되고, 반면언론기관은 패소하게 되는 경우 언론사의 이름으로 정정기사를 게재 함으로써 스스로 부정확한 보도를 시인하는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어느 한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타협에 도달하여 서로의 부담과 낭비를 피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3) 중재신청 및 결정

피해자는 중재신청에 앞서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직접 언론기관에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있으며(다만 사실보도가 있은 후 6 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피해자가 그 보도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없다), 언론기관이 청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협의가 불성립된 경우에는 협의 불성립한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중재신청을 하여야 한다(정간물법제 16 조 제 1 항, 제 18 조 제 1 항).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는 피해자와 그 상대방인 언론사는 분쟁의 원인이 된 공표가 있음을 피해자가 안 날로부터 1 개월 내에 중재신청을 하여야 하며 (다만 사실보도가 있은 후 6 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피해자가 그 보도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없다), 중재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된다(정간물법 제 18 조 제 1 항, 제 7 항).

이러한 반론보도신청과 중재신청에 있어서 게재를 원하는 반론문의 작성은 청구인이 하여야 하며, 언론기관에서 작성하는 것은 아니어서, 언론기관에서는 반박보도를 할 수 있도록 지면만을 할애하면 되는 것이다.

중재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언론사가 중재 기일에 2 회 이상 불출석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중재신청취지에 따라 반론보도 또는 정정보도를 이행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정간물법 제 18 조 제 5 항).

개정 정간물법에서는 중재위원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합의간주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재위원회가 21 일 내에 직권으로 중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언론중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제 18 조제 6 항).

언론중재위원회는 중재에 적합하지 않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중재불성립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정간물법 제 18 조 제 6 항), 이는 개정법률에서 추가된 내용이다. 개정 전에는 중재신청이 접수된 지 14 일이 지나도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재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간주조항을 두었으나, 개정법에서는 소극적태도를 탈피하여, 중재위원회에서는 중재결정 또는 중재불성립결정 중 반드시 한가지를 택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중재결정을 하기위해서는 14 일이라는 단기간의 중재심리기간 내에 가부간의 결론을 내려야 하므로, 쌍방의 주장이 모두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또는 사안이 복잡하여 결정을 내리기가 힘든 경우 등에는 사법부로 하여금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여 위와 같은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4) 중재의 성격

정간물법의 법문상으로는 '중재'로 되어 있으나, 중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양 당사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양 당사자가 중재위원회가 제시하는 결정사항을 받아들여 합의에 이르른 경우에만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그 법적인 성질은 '조정'인 것이다. 개정법률에 의하여 언론중재위원회는 직권으로 중재결정을 할 수 있으나, 이 결정 역시 결정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효력을 상실하므로 (제 18 조 제 6 항 본문, 제 7 항 단서), 직권중재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중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조정안의 강력한 권고'의 의미를 가지는데 그칠 뿐이다.

나. 법원의 심리절차

(1) 반론보도청구

언론중재위원회에 의해 중재불성립 결정이 내려진 때, 중재신청이 기각, 각하 결정된 때, 그리고 직권중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때에는 그러한 사실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4 일 내에 법원에 반론보도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정간물법 제 19 조 제 1 항).

법원의 소송절차는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절차에 의하므로 해방금액의 공탁(민소법 제 702 조), 보전필요성(민소법 제 697 조), 본안의 제소명령(민소법 제 705 조) 등 성질상 부합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필요적 변론이 아니며 증거조사도 소명으로 족하다 할 것이나 개정 정간물법이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심판에 관한 불복방법을 「이의신청」이 아닌 「항소」로서만 가능하도록 명시함에 따라 새로 마련된 대법원 규칙 (제 1432 호, 반론보도등 청구사건심판규칙)은 반론보도청구사건을 심리할 경우에 반드시 변론을 열도록 했다(위 규칙 제 3 조 제 1 항).

(2) 정정보도청구

정정보도청구의 경우 중재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인은 법원에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정정보도청구에 대한 법원의 심리절차는 반론보도청구권과는 달리 통상의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심리하면 된다. 다만, 법원은 신속한 정정보도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구제가 무의미하여지는 결과가 되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집중심리 등을 통하여 신속히 심리를 종결하여야 할 것이다.

8. 이행방법

가. 반론보도청구

(1)반론보도문의 게재 및 방송

반론보도문의 게재와 방송은 원래 보도가 있었던 정기간행물 및 방송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지면의 위치나 방송시간대도 원래의 보도와 동일하여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반론보도문의 자수는 원래보도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고(정간물법 제 16 조 제 5 항, 방송법 제 41 조 제 5 항, 종합유선방송법 제 45 조 제 5 항) 활자 크기나 체제도 원래보도와 대등한 것이어야 한다. 반론보도문의 내용은 원래 보도에 대한 반박과 이를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고 사죄의 표시등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반론보도문의

말미나 일부분에 언론사측의 견해를 밝히거나 재반박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하는 것이 통설이다.

(2) 이행의 확보

법원의 심리절차는 가처분절차에 의하기 때문에 확정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집행력이 발생하고 이의신청이나 상소가 있더라도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민사소송법 제 703 조 제 3 항 참조).언론사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강제나 대체집행은 채무의 성질상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다만 간접강제(민사소송법 제 693 조)에 의한 방법만이 가능하다. 즉,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때에는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금전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실무상으로는 보통 앞의 방법으로 한다. 간접강제는 청구의 인용을 조건으로 반론보도신청과 동시에 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으며, 개정정간물법에서는 이러한 점을 명문으로 규정하고있다 (정간물법 제 19 조 제 1 항).

나.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권과는 달리 정정보도문이 원보도문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다는 등의 제한이 없다. 또 그 보도의 방식은 궁극적으로 법원의 판결이 정한 바에 따를 것이나, 정정보도임을 명확히 하고 그 주체도 정정보도를 청구한 피해자가 아니라 원 보도를 하였던 언론기관임을 명백히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정의 범위를 넘어서서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의 양심의 자유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헌병재판소는 1991. 4. 1. 법원이 민법 제 764 조에 의하여 사죄광고를 하도록 명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한정위헌결정을 한 바 있다. 언론기관이 법원의 정정보도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간접강제를 신청하여 금전상의 부담을 과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9. 맺는말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반론보도청구권과 정정보도청구권은 그 주체와 요건, 행사의 방법 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체로 양자를 종합평가하면, 우선 언론의 피보도인(피해자)으로서는 민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이 청구기간의 제한이 없고 소멸시효의 적용만을 받으며,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그 행사에 있어서의 제한은 반론보도청구권보다 훨씬 적다고 할 수 있으나, 정정보도청구의 경우는 피해자가 그 요건사실을 모두 입증하여야 하고 비용이 많이 들며 보도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에서야 그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상당히 부담이 큰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언론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로 인한 중재절차 및 소송절차에서는 언론기관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점이 다소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정정보도청구의 소에서 패소하는 경우 스스로 오보임을 자인하는 보도를 내보내야 하는 부담도 있으므로 중재를 통하여 타협을 시도할 수 있는 반론보도청구절차가 덜 부담스럽다 할 것이다.

결국, 피해자나 언론기관 모두 정정보도청구보다는 반론보도청구가 서로에게 편리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반론보도청구에 의한 분쟁해결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이 진실의 발견이라는 언론의 책임을 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별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ㅁ 서울대 법과대학 졸, 동 사법대학원, 미국 콜럼비아대학 파커스쿨 수료

ㅁ 제 6 회 사법시험합격, 부산지방법원 판사, 대법원재판 연구관,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 중재위원

ㅁ 저서 : 민사소송법 외

ㅁ 현재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변호사